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2. 12. 1(목) 10:00

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273호

나. 제 출 자 : 윤영희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0.

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0.

2. 제안이유

상위법인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의 개정 사항(시행 2022. 6. 8. / 개정 2021. 12. 7.)을 반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을 변경함(안 제명).

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

→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
나. 근거 상위법을 목적에 반영함(안 제1조).

다.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함(안 제2조).

라.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변경함(안 제3조에서 제4조).

마. 경력단절 예방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5조에서 제6조).

바.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변경함(안 제7조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

1) 현행 조례 : 별도 첨부

2) 신・구조문 대비표 : 별도 첨부

3) 입법예고 : 2022. 11. 11 ～ 11. 17.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,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안 제명

-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의 전부 개정으로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(시행2022. 6. 8. / 개정 2021. 12. 7.)으로 제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의 제명을 변경함.

2) 안 제3조～제6조(구청장 책무, 시행계획, 실태조사 등)

-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사항 변경과, 경력단절 예방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함

3) 안 제7조(지원사업 등)

-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함.

다. 검토의견

○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이미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중인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전 정책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인정됨.

○ 따라서, 종전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을 전부개정한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을 반영하여 금천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
[시행 2022. 6. 8.] [법률 제18549호, 2021. 12. 7., 전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경력단절여성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혼인 · 임신 · 출산 ·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

나.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

2. “경제활동 촉진”이란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· 교육기관 · 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.

3. “경력단절 예방”이란 여성이 혼인 · 임신 · 출산 ·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,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